

2024년 3월 15일

Preview

비즈니스에 인공지능(AI)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학습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학습 데이터의 확보는 대부분
크롤링(crawling)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크롤링의 적법성 검토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적법성과 직결될 만큼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적법한 크롤링의 기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리걸 이슈 Legal Issues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크롤링에 대한 법적 고려 사항

민후 소식 Minwho News

골프의류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퇴사자에 대한 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이끌어 승소

리걸이슈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크롤링에 대한 법적 고려 사항

크롤링(crawling)이란, 자동화된 방법으로 지정된 특정 웹사이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 등을 방문해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확보 탓도 있겠지만 과거보다 크롤링에 대한 욕구나 이슈 또는 문의가 늘어가고 있다. 특히 크롤링을 전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적지 않기에 크롤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비즈니스 자체가 불법으로 판명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먼저 크롤링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력을 보면, 최초의 크롤링 사건은 리그베다위키 vs 엔하위키미러 사건에서 시작된다. 엔하위키미러는 리그베다위키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서비스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법원이 판시하면서 크롤링에 대한 법리 정립 작업이 시작됐다.

이후 잡코리아 vs 사람인 사건에 의하여 크롤링에 대한 법리가 정립되었는데,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크롤링해서 자사의 사이트에서 서비스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람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아니라 다수의 채용정보를 크롤링해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최초로 밝혔다.



김경환 대표 변호사

T. 02-532-3425

E. oalmephaga@minwho.kr

잡코리아 vs 사람인 사건 이후에는 야놀자 vs 여기어때 사건이 유명한데, 경쟁 관계에 있는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정보를 크롤링해서 분석한 사건이다.

민사법원은 부정경쟁행위가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형사법원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사적 판단과 형사적 판단을 구분해서 검토해야만 한다.

위 3개의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크롤링은 정보통신망 침입,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가 법적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크롤링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접근 권한 유무를 판단할 때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야놀자 vs 여기어때 사건에서 약관이나 코드상으로 크롤링 금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즉 상당한 양의 크롤링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비교해 판단해야 하며,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 복제 등이 된 부분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제반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인 바, 질적으로 가치가 낮거나 상당한 투자가 없다고 볼 정보에 대한 크롤링은 허용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 중 성과 모방은 형사 사안은 아니고 민사 사안인데,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 사이의 크롤링은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모든 크롤링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모든 크롤링이 허용된다고도 볼 수 없다. 개개의 사안 별로 법적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합법성 여부를 판명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비즈니스 모델 설계 단계부터 법적 검토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관련 기사 보기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크롤링에 대한 법적 고려 사항](#)

민후 소식

골프의류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골프의류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이 사건 디자인권자인 채권자로부터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당하였으며, 채권자의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곤경에 처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의 등록디자인과 채무자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점과 채권자 디자인에 등록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채권자의 디자인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현재 채무자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바탕으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디자인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채무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민후 소식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따른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 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제3자와 함께 공모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 기업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의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민후 소식

퇴사자에 대한 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에 대한 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배임 형사사건에서 퇴사자인 피고소인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퇴사 후 자신이 완성한 발명을 특허출원·등록하였고, 이에 고소인 회사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에서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고소인 회사가 피고소인이 완성한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권리 승계 등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특허를 출원한 시점이 고소인 회사를 퇴사한 이후라는 점을 입증하여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혐의에 따른 법적 곤란을 해소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